

2003. 12.

條例案審查報告書

-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
- 충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
- 충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
- 충주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
- 충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

總務委員會

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조례안	제안일자	회부일자	상정일자	의결일자	제안설명
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 조례중개정조례안	2003.11.29	2003.12. 3	2003.12. 5	2003.12. 5	총무과장
충주시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	2003.12. 1	"	"	"	"
충주시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	"	"	"	"	기획감사 과장
충주시립합창단설치 및운영조례안	2003.11.29	"	"	"	문화관광 과장
충주시세감면조례개 정조례안	"	"	"	"	세정과장

2. 제안설명요지

가.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

1) 제안이유

- 2004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공무원 일·숙직수당 기준이
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일·숙직수당
지급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

2) 주요골자

- 당직수당지급조항 신설

제7조(당직 및 비상근무)

- ⑤당직수당은 [별표4]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

[별표4]

당직수당지급기준표

구 분	지 급 액	비 고
일 직	30,000원	
숙 직	30,000원	

나. 충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

1) 제안이유

- 개정된 사무관리 규정이 2004. 1.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재정비하여 공인등록 및 관련사항 등 공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

2) 주요골자

- 개정된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전자이미지 관인의 인영, 공인대장 명칭, 공인 재등록 및 조문의 제목을 변경
- 관인대장관리 및 컴퓨터파일 관리부서 별도 지정운영
- 공인 공고범위를 전자이미지관인도 포함시행토록 확대
- 행정기관의 공인변천을 시대별로 알수 있도록 폐기된 공인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서 보관토록 함
- 기타 사무관리규정개정에 따른 제1호, 제4호, 제5호서식 변경

다. 충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

1) 제안이유

- 충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

2) 주요골자

-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제와 대상의 명문화
-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절차의 구체화
-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
- 사후평가, 별도 계정 설정 등 사후관리 강화

라. 충주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

1) 제안이유

- 지방예술인의 저변확대 및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「충주시립합창단」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

2) 주요골자

- 충주시립합창단 구성(안 제2조)
 - 단장, 지휘자, 반주자, 단무장 각 1인을 포함 50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
 - 합창단의 단장은 기획행정국장으로 함
- 단원의 자격 및 위촉(안 제6조)
 - 일반단원은 성악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전형위원회의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함
 - 국내외에서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는 특별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할 수 있음

마. 충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

1) 제안이유

- 현행 적용되고 있는 충주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개정으로 감면내용을 일부조정하고 기타 조례운영상 미비한 조문과 용어를 정리하는 등 감면조례를 개선·보완하기 위함

2) 주요골자

- 종교단체 소유 의료용 부동산
 -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도시계획세 100분의 50으로 경감 조정(안 제5조)
- 문화재로 지정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
 -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외 상업용 부동산을 추가함(안 제9조)
-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조정
 - 40㎡이하 영구임대주택에 국민임대주택 추가함(안 제11조)
- 주민공동체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폐지
 -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감면 폐지(안 제13조)
-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축소
 - 주택건설업자가 신축 취득한 미분양주택 세제 지원기간을 3년간으로 단축 조정(안 제14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

-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자치단체가 내부적으로 가능한 당직수당 편성기준을 폐지하여 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할수 있도록 되어 있음

- 당직수당 개선내용은 당직근무인력, 당직시설상태,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비소요액을 산정 현실정에 맞는 실비를 계상 일 · 숙직비를 현행 10,000원에서 30,000원으로 인상 지급하려는 것으로 타 자지단체와의 형평성 및 지방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인상하는 것임

나. 충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

- 본 개정조례안은 2004. 1. 1부터 개정된 사무관리규정이 전면시행 됨에 따라
-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 및 관인대장명칭 관인재등록 및 컴퓨터 파일관리 부서 별도 지정 운영 등 관련내용을 재정비 하여 공인을 효율적으로 운영 하려는 것임

다. 충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

- 본 조례안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
-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제외 대상을 명문화 하고 (법률,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는 경우 친목도모,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사업 및 단체, 기타, 개인, 기업 체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)
- 보조금의 지원절차를 구체화하여 (지원대상, 지원규모, 절차 등)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
- 사회단체보조금의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위하여 보조금의 심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 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시 주민의견 반영 등의 면밀한 심의가 사료됨

라. 충주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

- 본 조례안은 지방 예술인의 저변확대 및 지역 문화예술을 육성 발전 시키고 이를 계승 발전시켜 충주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시민의 문화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
- 2000년 의원간담회를 거쳐 2001년도에 조례안을 제출 3월 임시 회의시 심사보류후 4월 제61회 임시회의시 부결한 바 있음
- 충주시립합창단설치운영조례안은 소요예산 및 설치운영의 필요성 등의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

마. 충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

가. 종교단체 소유 의료용 부동산

-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,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현재 면제하고 있는 것을
⇒(개정)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조정

나. 문화재로 지정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

-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·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것을
⇒(개정) 부동산으로 개정하므로 상업용 부동산도 추가 면제하는 것임

다.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조정

- 전용면적 40m²이하 영구임대주택에서
⇒(개정)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추가하는 것임

라. 주민공동체 소유 자동차세에 대한 감면 폐지

-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
⇒(개정) 면제를 폐지하고 과세로 전환

마.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축소

- 주택건설업자가 신축취득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단축 (5년간 1000분의 3을)
⇒(개정) 3년간 1000분의 3을 적용

바. 기업의 지방이전 관련 감면 추가 신설

- 현행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내 공장에서
⇒(개정) 과밀억제권역,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최초 3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, 그 다음 2년간 50% 경감을 신설

사.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 축소

- 농업기반공사의 농지개량공사용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 면제에서
⇒(개정) 50% 경감으로 조정하는 것임

4. 질의.답변 요지

가.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

- ▶ 질의 : 2004년 당직비가 3만원으로 인상되었는데 당초예산에 2만원으로 계상한 사유는?
- 답변 : 수정예산에 1만원 추가 반영 계상 예정임

나. 충주시공인조례 중개정조례안

- “없음”

다. 충주시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안

▶ 질의 : 현재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조례안 개정 공포시 증액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?

- 답변 : 조례 개정후는 약 2억 8천만원 정도 증액 예정임

▶ 질의 :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 금액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가?

- 답변 :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예년 보조금액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증감 결정함

라. 충주시립합창단설치 및 운영조례안

▶ 질의 : 합창단 50인이하 구성시 연간 소요 예산은?

- 답변 : 년간 약 1억 4천만원정도 예산 소요

마. 충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

▶ 질의 : 종교단체 소유 의료용 부동산이란 어떤 경우인가?

- 답변 : 충주시는 현재 해당 사항 없으며 향후 사유 발생시 적용할 예정임

5. 심사결과

- 가.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: 원안가결
- 나. 충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: 원안가결
- 다. 충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: 원안가결
- 라. 충주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: 부 결
- 마. 충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: 원안가결

6. 붙 임

- 가.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부
- 나. 충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부
- 다. 충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1부
- 라. 충주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1부
- 마. 충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1부. 끝.